

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(제7조의11 관련)

배치대상	배치기준(단위 : 명)	비고
1. 소방청	2 이상	
2. 소방본부	2 이상	
3. 소방서	1 이상	
4. 한국소방안전원	본회 : 2 이상 시·도지부 : 1 이상	
5. 한국소방산업기술원	2 이상	